

<p>제2019-183호 2019년 10월 1(화)</p>	<p>시 보</p>  <p>여수시</p>	<p>시 정 지 표</p> <p>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9-2348호	「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입법예고	3
○ 여수시 공고	제2019-2352호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입법예고	15
○ 여수시 공고	제2019-2366호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3
○ 여수시 공고	제2019-2367호	여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7
○ 여수시 공고	제2019-2368호	여수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1
○ 여수시 공고	제2019-2370호	여수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5
○ 여수시 공고	제2019-2372호	도로 지정 공고(돌산읍 금봉리 961)	50
○ 여수시 공고	제2019-2375호	도로 지정 공고(남면 십장리 7)	51
○ 여수시 공고	제2019-2377호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공고	52
○ 여수시 공고	제2019-2381호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공고	55

회 략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공 고

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1.

여 수 시 장

「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2008. 5. 20.) 시 부칙에 조례 효력이 2016. 12. 31.까지로 되어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여수시장이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여수시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안 제5조제1항)
-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업무를 성실히 수행(안 제10조)
 - 시설의 유지 및 관리,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법 활동, 고객의 안전 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상거래 질서의 확립
- 여수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여수시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안 제12조)

- 여수시장은 농어민이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 감면 가능(안 제13조)
- 여수시장이 상인회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여수시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안 제15조제1항)
- 여수시장이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여수시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안 제16조)
- 상인조직은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안 제18조제1항)
- 여수시장은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상인조직에게 위탁하여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 체결(안 제20조제1항, 제2항)
- 여수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감독 가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 검사 가능(안 제22조제1항, 제2항)
-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가 기재된 철회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여수시장 및 동의 상대방에게 제출(안 제24조제1항)

3. 입법예고기간 : 2019. 10. 1. ~ 2019. 10. 21.(20일간)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받는사람 : 여수시장(지역경제과장)
- 전 화 : 061-659-4547 팩스 : 061-659-5816
- 이 메 일 : seh0728@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 메일(E-Mail)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전라남도, 여수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밖과 안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이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여수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구역은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해야 한다.

③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④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기준)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5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여수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 받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여수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6조(상권활성화구역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 및 상점가의 경우에는 같은 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7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절차) 여수시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

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미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상권활성화구역 관리) 여수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① 여수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를 받아 임시시장을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여수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0조(임시시장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만, 여수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1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여수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여수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여수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여수시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여수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농어민이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상인회원 자격)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15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여수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상인회 등록증을 여수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6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여수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의 대표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소재지
3. 시장관리자의 법인명 또는 상인조직·단체명, 대표자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관리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여수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7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 전라남도 또는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시설물은 여수시장의 소유로 한다. 다만,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 건물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에 따라 분담비율 만큼 소유권을 지분 등기하되 여수시장이 관리·수익권을 갖고 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은 협약을 통해 여수시장의 소유로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중에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여수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④ 국가, 전라남도 또는 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국가, 전라남

도 또는 시, 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그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제18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은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여수시장은 상인조직과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여수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이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해야 한다.

3.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

해야 한다.

② 여수시장 또는 상인조직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20조(위탁관리) ① 여수시장은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여수시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21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① 여수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여수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3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여수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24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 철회) ① 시장정비구역

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여수시장 및 동의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당사자의 생년월일
3. 당사자의 주소
4. 동의를 철회하려는 사유

② 여수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공 고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1.

여 수 시 장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수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수사랑상품권을 무기명 유가증권과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으로 함.(안 제1~2조)
- 시장이 여수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유가증권 발행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토록 함.(안 제4조)
- 여수사랑상품권의 종류는 2종(여수상품권, 여수전통시장상품권)으로 하며, 여수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5천 원권, 1만 원권, 3만 원권, 5만 원권으로 발행하고, 여수전통시장상품권은 5천 원권, 1만 원권으로 발행하

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수사랑상품권의 종류와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여수상품권은 여수시 일원으로, 여수전통시장상품권은 전통시장 내로 함.(안 제5조)
- 시장은 관내 금융기관에 여수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폐기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환전대행점 협약을 체결토록 함.(안 제6조, 제7조)
-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자는 가맹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가맹점·판매대행점·환전대행점·사용자 준수사항(안 제9조 ~ 제12조)
- 여수사랑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 및 환전대행점으로 한정함.(안 제13조)
- 시장은 여수사랑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여수사랑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여수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여수사랑상품권의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 여수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금액 및 환전 금액의 1000의 20범위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 시장은 여수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고,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시장은 여수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시장은 판매대행점, 환전대행점 및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

급 없이 수취한 여수사랑상품권을 환전할 경우 수수료, 여수사랑상품권의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3. 입법예고기간 : 2019. 10. 1. ~ 2018. 10. 21.(20일간)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받는사람 : 여수시장(지역경제과장)

- 전 화 : 061-659-3603 팩스 : 061-659-5816

- 이 메 일 : myselfhun@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 메일(E-Mail)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발행하는 여수사랑상품권의 발행·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사랑상품권”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판매하는 증표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이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과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여수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여수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서 그 소지자에게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환전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여수사랑상품권의 환전을 해주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여수사랑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수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 등과 관련하여 다

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여수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여수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여수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여수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수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위·변조와 부정 발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유가증권 발행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구매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카드나 전자상품권을 도입할 수 있다.

④ 여수사랑상품권의 종류는 2종으로 하며, 종류별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수사랑상품권의 종류와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여수상품권 : 5천 원권, 1만 원권, 3만 원권, 5만 원권

2. 여수전통시장상품권 : 5천 원권, 1만 원권

제5조(유통지역) ①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여수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여수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여수전통시장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6호의 전통시장으로 한정한다.

제6조(판매대행점 협약 등) ① 시장은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여수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폐기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여수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환전대행점 협약 등) ① 시장은 관내 금융기관 및 전통시장 상인회·단체, 기타 업체로 하여금 여수사랑상품권의 환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여수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전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환전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여수시에 등록된 전통시장 내 업소와 노점상은 가맹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맹점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기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영업 또는 사업장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된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8조제2항에 따른 업종 및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9조를 위반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여수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여수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수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여수사랑상품권

나. 실제 가맹점 매출액 이상의 여수사랑상품권

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여수사랑상품권 권면 금액 중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1만 원권 이하의 여수사랑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만 한정한다.

제10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여수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여수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수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여수사랑상품권 판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의 관리 감독에 협조해야 한다.

제11조(환전대행점 준수사항) ① 환전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여수사랑상품권의 환전을 해 주는 행위
2. 제9조항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여수사랑상품권의 환전을 해 주는 행위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여수사랑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수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여수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여수사랑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여수사랑상품권이 위·변조 등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인 경우

③ 사용자는 여수사랑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사용자는 여수사랑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3조(여수사랑상품권의 환전) ① 여수사랑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 및 환전대행점으로 한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여수사랑상품권의 환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점은 가맹점의 환전 청구시 위·변조 여부를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14조(여수사랑상품권의 할인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여수사랑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여수사랑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 10의 범위에서 여수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1명당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은 월 권면 금액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거나 할인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여수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금액 및 환전 금액의 1000분의 20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점과의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여수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과 여수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

제15조(여수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수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여수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여수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

해야 한다.

② 시장은 판매대행점, 환전대행점 및 가맹점을 감독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대행점, 환전대행점 및 가맹점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 시장은 여수사랑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여수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여수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제8조제3항의 가맹점 취소 사유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 및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건수별로 10만 원을 지급하며, 1명당 연간 지급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19조(환수 조치) 시장은 판매대행점, 환전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여수사랑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여수사랑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가맹점이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20조(유효기간 경과 여수사랑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여수사랑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 다만 시장은 여수사랑상품권이 유통되지 않고 구매자가 확인될 경우에 구매자의 청구가 있으면 할인액을 제외한 후 환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행되는 여수사랑상품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한 여수사랑상품권은 이 조례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환전대행점은 이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환전대행점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가맹점은 이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으로 본다.

【붙임 1】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서 : 미첨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정 내용이 운영 중에 있는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지역경제과장 정재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 ①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 다. 경륜·경정 :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 바. 소싸움경기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2. "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 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

른 카지노사업자

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다.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주사업자

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사업자

마.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시행자와 수탁사업자

3. "불법사행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은 제외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

□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 공정거래위원회

제7조(소멸시효)

상품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발행자등이 자발적으로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상품권의 잔액반환)

- ①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 ②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 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공 고

「여수시민의 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여 수 시 장

「여수시민의 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일부 조문에 대한 단순문구 변경으로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8조(심사내용의 공포금지) 중 “시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내용은”을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내용은”으로 한다.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입법예고기간 : 2019. 10. 1. ~ 10. 20.(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 기타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번호 061-659-5807)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주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총무과) (59675)
- 업무담당자 : 총무과 안성국(ask3830@korea.kr)
- 문의전화 : 061-659-3106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민의 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중 “시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내용은”을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내용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u>시상자</u> 선정에 관한 심의 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않으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u>수상자</u> 선정에 관한 심의 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않으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 고

「여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입법예고기간 : 2019. 10. 1. ~ 10. 20.(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 기타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번호 061-659-5807)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주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총무과) (59675)
- 업무담당자 : 총무과 안성국(ask3830@korea.kr)
- 문의전화 : 061-659-3106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여수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수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 고

「여수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의해”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에 의해”로 한다.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입법예고기간 : 2019. 10. 1. ~ 10. 20.(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 기타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번호 061-659-5807)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주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총무과) (59675)
- 업무담당자 : 총무과 안성국(ask3830@korea.kr)
- 문의전화 : 061-659-3106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의해”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에 의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의해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동에 두는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u>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u> 에 의해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동에 두는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 고

「여수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 각종 국경일 등 전 시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고자 태극기 보급 대상 확대 근거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 태극기 무상 보급 대상에 관내 초·중·고교생 신설(안 제5조 4호)
- 태극기 무상 보급 대상에 매월 정례회 시장표창 대상자 신설(안 제5조 5호)
- 위 호 신설에 따른 기존 제5조 4호를 6호로 변경(안 제5조 6호)

3. 입법예고기간 : 2019. 10. 1. ~ 10. 20.(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 기타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번호 061-659-5807)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주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총무과) (59675)
- 업무담당자 : 총무과 이종현(derast@korea.kr)
- 문의전화 : 061-659-3095

붙임 여수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국기계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국기 보급)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국기 보급)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 관내 초·중·고교생
5. 매월 정례회 시장표창 대상자
6.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국기 보급)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p><신설> <신설></p> <p>4. <u>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u></p>	<p>제5조(국기 보급)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 <u>관내 초·중·고교생</u> 5. <u>매월 정례회 시장표창 대상자</u> 6. <u>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u>

도로 지정 공고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961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계		5~6m	10.3m	59㎡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돌산읍 금봉리	961 1045	5~6m	10.3m	59㎡	"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061-659-4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0. 1.

여 수 시 장

도로 지정 공고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심장리 7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계		73m	6m	495㎡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남면 심장리	7	73m	6m	495㎡	"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061-659-4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0. 1.

여 수 시 장

분할개시결정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19. 10. 1. ~ 2019. 10. 23.(3주)
2. 공고 내용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 인
시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내	역	불	임			

2019년 10월 1일

여 수 시 장

■ 분할개시결정 공고 내역

토 지 표 시						공 유 토 지 분 할 신 청 인			동의인 외 인
시	읍·면	리·동	지 번	지목	면적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여수	소라	관기	905 950	대 대	258 592	조○○	-	여수시	1
여수	소라	대포	325	대	439	정○○	-	여수시	1
여수	율촌	조화	209-1	대	346	서○○	-	광주광역시	3
여수	율촌	산수	1057-2 1058	대 대	407 364	최○○	-	여수시	1
여수	율촌	신평	134-1	대	1,375	선○○	-	여수시	1
여수	화양	용주	1515-14	잡종지	106	박○○	-	순천시	1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서면심의 결과 조서

심의 번호	토지소재		지 번	지목	면적 (㎡)	분 할 신청인	공유 인수	분 할 예 정 필지수	심의결과	비고
	읍면	동리								
계		12건	14필지		5,921	12명	28	31		
181	소라	관기	905 950	대 대	258 592	조○○	2	4	원안가결	
182	소라	대포	325	대	439	정○○	2	2	"	
183	율촌	조화	209-1	대	346	서○○	4	2	"	
184	율촌	산수	1057-2 1058	대 대	407 364	최○○	2	4	"	
185	율촌	신평	134-1	대	1,375	선○○	2	2	"	
186	화양	용주	1515-14	잡종지	106	박○○	2	2	"	
187	-	종화	315	대	169	김○○	2	2	"	
188	-	종화	316-1	대	215	윤○○	2	2	"	
189	-	충무	96-11	대	208	김○○	2	3	"	
190	-	신월	83-10	대	94	도○○	2	2	"	
191	-	오천	361-6	답	400	김○○	2	2	"	
192	돌산	우두	720-16	대	948	박○○	4	4	"	

분할개시결정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19. 10. 1. ~ 2019. 10. 23.(3주)
2. 공고 내용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 인
시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성명	생년월일	주소	
			내	역	붙	임			

2019년 10월 1일

여 수 시 장

■ 분할개시결정 공고 내역

토 지 표 시						공 유 토 지 분 할 신 청 인			동의인 외 인
시	읍·면	리·동	지 번	지목	면적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여수	-	종화	315	대	169	김○○	-	전남 여수시	1
여수	-	종화	316-1	대	215	윤○○	-	전남 여수시	1
여수	-	충무	96-11	대	208	김○○	-	전남 여수시	1
여수	-	신월	83-10	대	94	도○○	-	전남 여수시	1
여수	-	오천	361-6	답	400	김○○	-	전남 여수시	1
여수	돌산	우두	720-16	대	948	박○○	-	전남 여수시	3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서면심의 결과 조서

심의 번호	토지소재		지 번	지목	면적 (㎡)	분 할 신청인	공유 인수	분 할 예 정 필지수	심의결과	비고
	읍면	동리								
계		12건	14필지		5,921	12명	28	31		
181	소라	관기	905 950	대 대	258 592	조○○	2	4	원안가결	
182	소라	대포	325	대	439	정○○	2	2	"	
183	율촌	조화	209-1	대	346	서○○	4	2	"	
184	율촌	산수	1057-2 1058	대 대	407 364	최○○	2	4	"	
185	율촌	신평	134-1	대	1,375	선○○	2	2	"	
186	화양	용주	1515-14	잡종지	106	박○○	2	2	"	
187	-	종화	315	대	169	김○○	2	2	"	
188	-	종화	316-1	대	215	윤○○	2	2	"	
189	-	충무	96-11	대	208	김○○	2	3	"	
190	-	신월	83-10	대	94	도○○	2	2	"	
191	-	오천	361-6	답	400	김○○	2	2	"	
192	돌산	우두	720-16	대	948	박○○	4	4	"	